

중국 · 홍콩 · 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현행(~2.28.)	변경(3.1.~)	개정사유
I. 공항검역 대응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 발 입국자 대상 Q-CODE 이용 의무('23.1.2.~) -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현행과 같음)		입국 후 검사 의무 해제
◆ 중국 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23.1.5.~)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조			
◆ 중국 발 입국자*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1.2.~) -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 Q-CODE 누리집(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삭 제)		
◆ 홍콩, 마카오 발 입국자 입국 전 검사 및 Q-CODE 이용 의무('23.1.7.~)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지참하고 Q-CODE 입력 완료	(현행과 같음)		

- 1 -

쪽	현행 (~2.28.)	변경 (3.1.~)	개정사유																																				
2	❶ 중국 출발 입국자 <table> <tr> <td>구 분</td><td>입국 전 음성확인서 (1.5.~)</td><td>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1.2.~)</td><td>확진자 격리</td></tr> <tr> <td>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td><td>⇒ 제출(적합) ⇒</td><td>보건소</td><td>⇒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td></tr> <tr> <td>단기체류외국인</td><td>⇒ 제출(적합) ⇒</td><td>▲공항검사센터(비용 자부담) ▲검역소*</td><td>⇒</td></tr> </table> * (검역소)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시, 검역소 검사 ❷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 <table> <tr> <td>구 분</td><td>입국 전 음성확인서 (1.7.~)</td><td>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td><td>확진자 격리</td></tr> <tr> <td>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td><td>⇒ 제출(적합) ⇒</td><td>보건소</td><td>⇒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 시설</td></tr> <tr> <td>단기체류외국인</td><td>⇒ 제출(적합) ⇒</td><td>▲공항검사센터 (비용 자부담)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td><td>⇒</td></tr> </table>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 (1.5.~)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1.2.~)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비용 자부담) ▲검역소*	⇒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 (1.7.~)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 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 (비용 자부담)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❶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table> <tr> <td>구 분</td><td>입국 전 음성확인서</td><td>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td><td>확진자 격리</td></tr> <tr> <td>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td><td>⇒ 제출(적합) ⇒</td><td>보건소</td><td>⇒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td></tr> <tr> <td>단기체류외국인</td><td>⇒ 제출(적합) ⇒</td><td>공항검사센터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td><td>⇒</td></tr> </table> (삭 제) (삭 제)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 (1.5.~)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1.2.~)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비용 자부담) ▲검역소*	⇒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 (1.7.~)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 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 (비용 자부담)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구 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제출(적합)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공항검사센터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 2 -

쪽	현행(~2.28.)	변경(3.1.~)	개정사유								
	㉓ 일반 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외 국가) 출발 입국자 <table><tr><td>구 분</td><td>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td><td>확진자 격리</td></tr><tr><td>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본인 입증)</td><td>□ 보건소</td><td rowspan="2">□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td></tr><tr><td>단기체류 외국인</td><td>□ ▲공항검사센터 (비용 자부담) ▲의료기관(비용 자부담)</td></tr></table> * 단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검사장소)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검사센터 또는 검역소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본인 입증)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 외국인	□ ▲공항검사센터 (비용 자부담)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㉔ 일반 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외 국가) 출발 입국자 (현행과 같음) (삭 제)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본인 입증)	□ 보건소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단기체류 외국인	□ ▲공항검사센터 (비용 자부담)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 3 -

쪽	현행(~2.28.)	변경(3.1.~)	개정사유
3	○ (기본사항)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 - (안내사항)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 배포[참고1]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입국후 검사) PCR검사 및 검사 결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CODE) 누리집에 등록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중국 출발 입국자 및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 후,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결과 대기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없는 공항검역소에서는 채취한 검체를 관할 질병 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국내거소가 확실한 보호자(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가 있는 만6세 미만 아동과 그 동행자(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보호자 거주지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홍콩·마카오 출발 및 일반 국가(중국 외) 출발 입국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비용 본인부담)	○ (기본사항)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 (삭 제)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입국 후 검사)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14-2판의 기준에 따름 ※ (3일 이내 자율 검사)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자율 검사(PCR) 가능	

- 4 -

쪽	현행(~2.28.)	변경(3.1.~)	개정사유
4	나. 음성확인서 확인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나. 음성확인서 확인 ○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검체 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택대기 가능)	
5	다. 기타 사항 ○ (검역소) 부득이하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하지 못한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역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입력 확인 후 검역 완료 - Q-CODE 이용자 검역정보는 검역 완료시, 지자체로 자동 연계 *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지자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정보 확인 가능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다. 기타 사항 ○ (검역소) 부득이하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하지 못한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역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입력 확인 후 검역 완료 - 입국 후 검사 의무가 있는 2월 28일까지의 입국자 정보는 지자체로 연계되며 한시적으로 확인 가능(~3.14)하고, 3월 1일 이후 입국자 정보는 지자체 연계하지 않음. ○ (지자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을 통해, 입국 후 검사 의무가 있는 중국발 입국자 정보를 확인하여 검사 관리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IV. 항만검역 대응 주요사항			
6	◆ 중국 출항 하선자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23. 1. 2~) * 홍콩·마카오 출항 하선자는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 중국·홍콩·마카오 승선 선원 국내 하선 시, 사전 PCR검사 의무(‘23. 1. 13.~) - 승선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미제출자 국내 하선 제한)	(삭 제) ◆ 중국·홍콩·마카오 승선자(내국인 포함) 국내 하선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3.1.13.~) (현행과 같음)	

- 5 -

쪽	현행(~2.28.)	변경(3.1.~)	개정사유																																
7	㉠ 중국 출항 하선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th><th>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th><th>확진자 격리</th></tr> <tr> <td>상륙하선자 전원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구분 없음)</td><td>검역소 제출(직합)</td><td>검역소 선박내 대기 또는 검역소 격실 격리</td><td>▲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td></tr> </table> * (음성확인서) 중국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 음성확인서 제출 ※ 단,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음성확인서 미제출 ㉡ 홍콩·마카오 출항 하선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th><th>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th><th>확진자 격리</th></tr> <tr> <td>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본인 입증)</td><td>검역소 제출(직합)</td><td>보건소</td><td>▲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td></tr> <tr> <td>단기체류외국인</td><td>검역소 제출(직합)</td><td>의료기관 (비용 자부담)</td><td>▲선박 내 격리</td></tr> </table> * (음성확인서) 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 음성확인서 제출 ※ 단,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음성확인서 미제출	구 분	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확진자 격리	상륙하선자 전원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구분 없음)	검역소 제출(직합)	검역소 선박내 대기 또는 검역소 격실 격리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구 분	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본인 입증)	검역소 제출(직합)	보건소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단기체류외국인	검역소 제출(직합)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선박 내 격리	㉠ 중국·홍콩·마카오 출항 하선자 <table border="1"> <tr> <th>구 분</th><th>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th><th>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th><th>확진자 격리</th></tr> <tr> <td>내국인</td><td>검역소 제출(직합)</td><td>보건소</td><td>▲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td></tr> <tr> <td>장기체류외국인</td><td>검역소 제출(직합)</td><td>의료기관 (비용 자부담)</td><td>▲선박 내 격리</td></tr> </table> * (음성확인서)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 음성확인서 제출 (삭 제) (삭 제)	구 분	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	검역소 제출(직합)	보건소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장기체류외국인	검역소 제출(직합)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선박 내 격리	
구 분	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확진자 격리																																
상륙하선자 전원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구분 없음)	검역소 제출(직합)	검역소 선박내 대기 또는 검역소 격실 격리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구 분	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본인 입증)	검역소 제출(직합)	보건소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단기체류외국인	검역소 제출(직합)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선박 내 격리																																
구 분	하선 전 음성확인서 (1.13.~)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	검역소 제출(직합)	보건소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장기체류외국인	검역소 제출(직합)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선박 내 격리																																

- 6 -

쪽	현행(∼2.28.)	변경(3.1.∼)	개정사유																		
	③ 일반 국가(중국,홍콩,마카오 외 국가) 출항 하선자 <table><tr><td>구 분</td><td>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권고)</td><td>확진자 격리</td></tr></table> <table><tr><td>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td><td>보건소</td><td>▲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td></tr></table> <table><tr><td>단기체류외국인</td><td>의료기관(비용 자부담)</td><td></td></tr></table>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보건소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단기체류외국인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② 일반 국가(중국,홍콩,마카오 외 국가) 출항 하선자 <table><tr><td>구 분</td><td>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td><td>확진자 격리</td></tr></table> <table><tr><td>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td><td>보건소</td><td>▲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td></tr></table> <table><tr><td>단기체류외국인</td><td>의료기관(비용 자부담)</td><td></td></tr></table>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단기체류외국인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보건소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단기체류외국인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확진자 격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선박 내 격리																			
단기체류외국인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8	□ 하선자 검역 ○ (입국후 검사) 하선자 전원 PCR 검사 실시 -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중국 출항 하선자 전원(내·외국인 구분 없음)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홍콩·마카오 및 일반국가(중국 외) 출항 하선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비용 본인부담) ※ 하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 (단, 보안 구역 내 작업자는 제외) ※ 응급으로 긴급 병원 후송 경우, 병원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로 대체 가능	□ 하선 절차 ○ (검역정보 확인)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여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을 원칙 *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증상분류)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체크 결과 증상 분류 ○ (입국 후 검사)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14-2판의 기준에 따름 ※ (3일 이내 자율 검사)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자율 검사(PCR) 가능																			

- 7 -

쪽	현행(~2.28.)	변경(3.1.~)	개정사유
	※ (참고) 하선 유형에 따른 구분 ·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 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 (재승선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오출했다가 선박으로 복귀하는 내국인 ○ (검역확인증) 음성 판정 시, 검사 대상자에게 검역확인증[참고4] 발급 - 하선자는 발급받은 검역확인증을 출입국 입국심사시 제시 * 발급 번호, 대상자 소속 선박명, 대상자 성명, 발급일 확인 ○ (일일상황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참고1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안내문	(삭 제)	
-	참고2 중국 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 (유의사항) 3. 모든 중국 發 해외입국자는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참고2 중국 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 (삭 제)	
12	<서식-2> 중국 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주의사항) - 모든 중국 發 해외입국자는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삭 제)	

- 8 -

쪽	현행(∼2.28.)	변경(3.1.∼)	개정사유
15	참고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 시행일 : 2023. 1. 7. ○ (입국 후) 입국 후 PCR검사받고 (이하생략) ○ (입력순서) 입국 후 PCR 검사결과 등록	참고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문 ○ 시행일 : 2023. 3. 1. ○ (삭 제) ○ (입력순서) 입국 후 검역관에게 제출	
—	참고4 검역 확인증(항만 검역소) 참고5 검역 확인증 관리 대상(항만 검역소)	(삭 제) (삭 제)	
16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23.1.21.)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23.3.1.)	
18	11.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만 6세 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현행과 같음) (삭 제)	
20	16.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는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 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PCR검사) 실시	(삭 제)	

- 9 -

쪽	현행(∼2.28.)	변경(3.1.∼)	개정사유
—	18. 영유아의 경우 공항검사 후 “공항 내 대기장소 대기” 의무가 있는지? ○ 국내 거소가 확실한 보호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가 있어 재택격리 전환 가능한 만 6세 미만 아동과 그 동행자(단기체류외국인)는 공항 검사 후 보호자* 거주지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 * 국내 거소지가 확실한 보호자(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만 가능(신분증 지참) ○ 이동시 대중교통은 이용 불가하며, 본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만 이용 가능 ※ 기타 상세사항은 검역소 또는 검역관의 지시에 따름	(삭 제)	